







목 차

- 1. SK hynix 3자 인증기관 지정
- 2. 2021년 1차 심사원 양성과정 계획
- 3. 고효율 인증 LED 조명 효율 등급제 전환
- 4. 전자파적합성(EMC) 대상기자재 명확화
- 5.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



SK hynix 3자 인증기관 지정



- ICR은 SEMI 평가 및 CE 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SK hynix 지정 3자 인증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.
- 2021년부터 SK hynix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는 지정된 3자 인증기관을 통해서만 위험성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저희 ICR은 SK hynix에 납품되는 장비에 대해, 국내법 및 SK hynix에서 제공하는 Safety Common Spec.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장비 설계 & 제작 과정에서의 장비 안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

SK hynix 3자 인증기관 지정



■ ICR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며, 2021년 부터는 3자 인증기관에서 장비 안전 검증이 수행된 장비만이SK hynix 에서 수용됩니다.

1. 장비 안전 인증

- SEMI 평가 Report
- CE Report 및 Certificate
- S-Mark 및 KCs Report
- 2. 국내법 & SK hynix Safety Spec 검토 결과서

산업안전센터 / 양 대 송 선임연구원 T.010-5522-4529 / yds@icrqa.com

2021년 1차 심사원 양성과정 계획



- ICR은 심사원 교육 및 관리 기관인 Exemplar Global에 등록된 ISO 인증 심사원 교육 기관 입니다.
- ICR은 2020년 1월 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개최할 예정 입니다.
- AU, TL, QM, EM, OH, FS, MD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 분들이 각 모듈별로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.
- ICR은 투명, 신뢰 공정한 심사를 모토로 하여 실력 있는 심사원 배출을 위하여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.

※ 2021년 01월 심사원양성과정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QM 모듈	01월 11일~12일(2일간)	8시간/1일, 총 16시간(2일간)
EM 모듈	01월 13일~14일(2일간)	8시간/1일, 총 16시간(2일간)
AU/TL 모듈	01월 18일~20일(3일간)	8시간/1일, 총 24시간(3일간)
OH 모듈	01월 21일~22일(2일간)	8시간/1일, 총 16시간(2일간)
FS 모듈	01월 25일~26일(2일간)	8시간/1일, 총 16시간(2일간)
MD 모듈	01월 27일~28일(2일간)	8시간/1일, 총 16시간(2일간)

※ 금번 교육은 Covid-19 상황에 따라 원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☎ 문의처

시스템인증본부 / 김 채 린 주임연구원 T.02-6351-9001 / kcl@icrqa.com

고효율 인증 LED 조명 효율등급제 전환



■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/ LED 센터등기구 / LED 보안등기구

- 고시번호 : 제 2009-202호

- 최초 제정 : 2009. 09. 02(시행일과 동일)

- 2017. 11. 29 품목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통합(제 2017-168호)

■ LED 가로등기구 / LED 투광등기구 / LED 컨버터 외장형

- 고시번호 : 제2012-91호

- 최초 제정 : 2012. 04. 30(시행일 동일)

- 2017. 11. 29 품목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통합(제2017-168호)

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 제외 기준



■ 기자재의 기술 수준

- 가.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
- 나.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

■ 기자재의 보급 정도

- 가.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
- 나.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

■ 기자재의 인증 등 실적

- 가.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
- 나.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·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
- **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** 해당 기자재의 기술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,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
- ※ 비고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자재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한다.

에너지효율등급제 이관 사례 – LED 램프



■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/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

-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: AC 220V,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LED 램프

-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: 정격전압 AC/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일반 조명용 LED 램프

- 고시번호 : 제2017-206호

- 시행일 : 2018. 04. 01

추진배경 : 보급 활성화된 제품의 효율 관리 및 효율 정보제공을 위해 효율등급제도 시행

- 추진근거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,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

에너지효율등급제 이관 예정 품목 및 이관 일정



■ 직관형 LED 램프 (컨버터 외장형)

-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"LED 램프" 품목에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관 추진

■ 실내용 LED 등기구

- 소비전력 150 W 이하 실내용 일반 LED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이관 추진 (적용 및 제외 범위를 설정)
- 소비전력별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마련
- 범위 인증 방안 마련

■ LED 조명 제도이관 일정

- 1. LED 조명 인증품목 일몰 및 제도이관 추진 (~2020년)
- 2. 일몰제 예고 고시 시행 (~2021년)
- 3. 품목 제외 및 이관 (~2023년)

☎ 문의처

전기안전평가센터 / 양 영 준 전임연구원 T.010-5522-3613 / yangyj@icrqa.com



1. 불명확 기자재 최소화

현행(별표 1) 개선(별표 1) ▶ 멀티미디어기기류 ▶ 멀티미디어기기류 • 컴퓨터,컴퓨터주변기기[기타 정보기기류 포함] • 좌동 정시험기관 • 좌동 • 사무기기류[기타 사무기기류 포함] • 방송수신기 및 A/V 기기류 • 좌동 • [삭제] 기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 • [기타 이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]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▶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기청소기, 세탁기 등 [개별 기타 포함] • 좌동 합등록 * 기타:①주방용 전동기기②전기액체가열기기 ③게임기구4전동공구 ⑤이동수단용전동기기 • [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•전동기기류] • [삭제] 이와 유사한 전기•전동기기류 ▶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▶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• 좌동 • 전기가열기기, 전기소독기 등 기시험 • [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•전동기기류] • [삭제] 이와 유사한 전기•전동기기류 • 개별 품목 기타사항 정격 입력전력 이상 • 개별 품목 기타사항 정격 입력전력 이상 (10kW 초과 포함) (10kW 초과 제외) 가, 다, 라, 사, 아, 자, 파목의 기자재 중 가, 다, 라, 사, 아, 자,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· 합 등 록 * 산업용 :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 * 산업용 :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에 사용되는 기자재 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

그 밖에 가목~하목에 준하는 기기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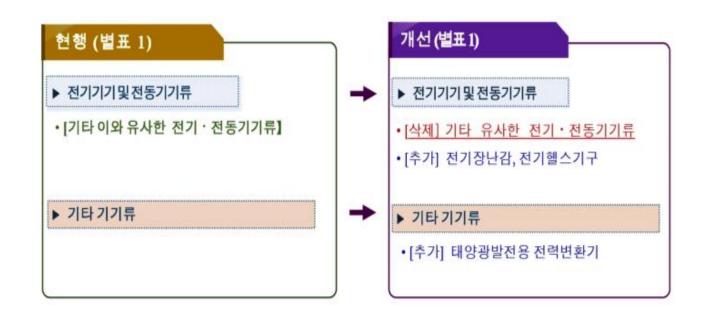
산업환경 규격만 적용되는 기자재

[삭제] 그 밖에 가목~하목에 준하는 기기로

산업환경 규격만 적용되는 기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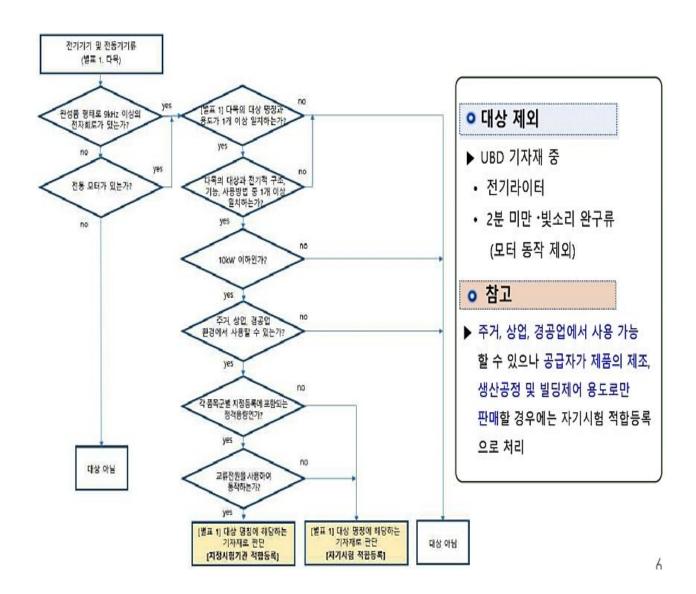


2. 필수 대상 규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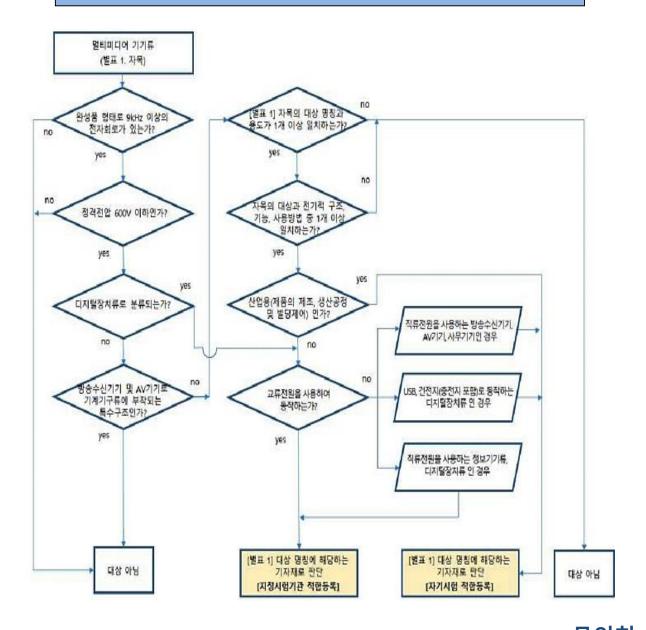


3-1. 명확화 매뉴얼(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)





3-2. 명확화 매뉴얼(멀티미디어 기기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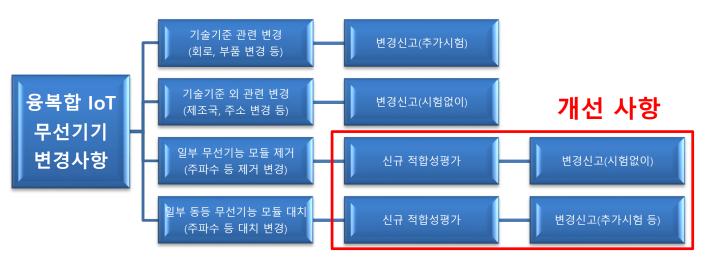
☎ 문의처 전파시험센터/ 박 종 민 책임연구원 T.070-5083-2664 / kaelu@icrqa.com

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

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신청 기재사항 간소화



무선기기 적합성평가 변경 절차 개선



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



변경시험 허용 범위 확대 등

현행(고시 제15조)

개선(고시 제15조)

형식기호 관련 변경 범위 (제1항 제1호)

- •무선국 허가 등과 관련 무선기자재
- •무선국 허가 등과 비관련 무선기자



형식기호 일부 삭제로 변경 범위 확대(제1항 제1호)

- •(용도/사용환경/합격자/방식) 삭제 에 따른 변경 허용
- •(단일기기)기기부호 외에 변경 허용 (기술기준범위내) (복합무선)상동 및 기기부호 삭제, 대치 변경 가능

형식기호 무관 변경 범위

- 기술기준 변경사항
- •H/W 변경 없이 S/W를 이용하여 새로 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하여 시 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(제1항제2호)
- •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 재가 주파수 할당에 따라 H/W 변경없 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 지는 경우**(제1항 제3호)**
- 단순 변경사항
- •H/W 변경없이 S/W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 는 경우(**제4항**)
- •신설 신설



형식기호 무관 변경 범위 명확화 및 확대

- 기술기준 변경사항의 명확화
- •좌동, 다만 다른 무선기자재의 기기부 호 추가는 불가(제1항 제2호)
- •좌동(제1항 제3호)
- 단순 변경사항
- •H/W변경없이 S/W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 는 경우(제3항제1호)
- •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적합성평가 받 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대치(제3항 제3호 제1목)
- •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제거(2목)

☎ 문의처

전파시험센터 / 이 홍 규 전임연구원 T.010-5522-2943 / hklee@icrga.com



www.icrqa.com

ICRO-31/R20161125 본 문서는 법률 제 14088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, ICR의 지적 자산으로 불법 편집 및 복사를 급합니다.